

# 중국의 제조물책임(PL) 현황 및 시사점



김 준 철  
산업자원부 산업구조과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이다. 대중수출은 '92년 26.5억불에서 '03년은 300억불을 상회했으며 '03년 대중 무역흑자는 100억불 정도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03년 6월말 현재 투자현황은 8,036건, 71억 7천만달러로 '92년 대비 29배와 34배 증가하였으며 중소기업의 투자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대중국 직접투자가 무역흑자의 55%를 유발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최대 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03년 6월말 현재 투자현황은 8,036건, 71억 7천만달러로 '92년 대비 29배와 34배 증가하였으며 중소기업의 투자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대중국 직접투자가 무역흑자의 55%를 유발하고 있다.

## 1. 중국경제와 우리나라

중국의 경제규모(GDP)는 세계 6위다. 교역규모는 세계 5위(수출 5위, 수입 6위)이며 외환 보유고는 세계 2위, 외국인 투자유치는 세계 1위이다. 금년도 경제성장은 8%이상이 될 전망이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이다. 대중수출은 '92년 26.5억불에서 '03년은 300억불을 상회했으며 '03년 대중 무역흑자는 100억불 정도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03년 6월말 현재 투자현황은 8,036건, 71억 7천만달러로 '92년 대비 29배와 34배 증가하였으며 중소기업의 투자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대중국 직접투자가 무역흑자의 55%를 유발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긴축정책으로 내수경기의 진정 가능성은 있으나, 중국내 실업문제, 북경올림픽 특수, 도·농간의 격차해소 필요성 등으로 경기의 급속한 냉각은 없을 전망이다. 따라서 중국 내수 진정으로 대중국 수출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수는 있으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는 한 전반적인 수출호조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2. 중국의 제조물책임

### 1) 산품질량법 현황

중국 제제품질법의 정식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 산품질량법이며 1993년 2월 22일 제7회 전인대에서 공표되었고 2000년 7월 8일 1차 개정되었다. 개정목적은 ① 제품품질 강화, ② 제품품질에 대한 기업책임을 명확화, ③ 소비자 안전 확보, ④ 사회·경제 질서 보호 등이다.

중국의 산품질량법은 중국의 법체계 상 전문법(우리나라에서는 특별법)에 속하며, 제품품질관리에 관한 기본법이다. 산품질량법이 기본 모법의 성격을 가진 관계로 실제 세부실행과 관련한 시행령은 각 지방마다(성 중심) 산품질량법을 기본으로 한 세부 실행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중국의 산품질량법은 우리나라 제조물책임과는 달리 품질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품품질 책임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나타내고 있다. 제품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한 법률적 제도 성격이 강한 우리나라 제조물책임과는 차이점이 있다.

산품질량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조물은 국내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이 비슷하나, 무형의 제조물 즉, 전기나 가스의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우리나라는 적용됨)되어 있다. 제품사고 발생에 따른 기업의 책임추궁은 민사상 책임, 행정상 책임, 형사상 책임을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재 제품품질관리?감독과 제품책임에 관한 규정이 통합되어 있으나 제품책임만을 별도로 독립하여 별도의 법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기업의 책임범위(징벌적 손해배상 포함 등)가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 산품질량법 자체의 개정은 현재 논의 단계에 있으나, 세부 실행법이라고 할 수 있는 각 성별로 입법 시행 법률은 상해를 중심으로 기업의 책임범위를 강화한 개정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 2) 중국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중국 국무원 직속기관으로 정식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 총국(약칭 국가질검총국)

으로, 전국 질량, 계량, 특정설비안전감찰, 수출입 상품검역, 위생검역, 동식물검역, 인증 및 인가, 표준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 집행기구이다. 국가질검총국 내에는 10개 부문(질량관리사, 계량사, 통관업무사, 위생검역관리사, 검사사, 수출입식품안전국, 특정설비안전감찰사, 산품질량감독사(산품질량법과 관련), 법집행감사사)의 직속기구와 2개의 산하 행정관리위원회(국가인정인가감독관리위원회,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가 있다. 지방조직으로 각 지방(성)에 국가질검총국에서 직접 관리하는 35개의 출입국 검역국이 있으며, 31개 성, 성 이하 전국 369개 시(市), 2,810개 현(縣)에 질량기술감독국이 설치되어 있는 전국적인 질량감독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 □ 정부차원의 제품안전 확보제도

##### ① 식품 품질안전 시장진입제도 (강제제도)

중국 내 생산·판매 기업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정기적 검역을 실시, 관리상태가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생산을 금지시키는 제도이며 검역에 통과된 기업에 대해선 허가증을 발부한다.

##### ② 공해제품 허가증 제도

사람의 건강 및 동식물의 안전에 관련된 중요 공업제품에 대하여 허가증을 발행하며 허가 후 현재 생산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도 무작위 추출검사(Random Inspection)를 실시하여 허가 유지여부 판단한다.

##### ③ 제품품질국가 감독제도

중요공업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하여 해당 기업의 제품을 검역·검사를 실시하여 품질문제 발생시 제재를 가하는 제도로 불합격제품 또는 소비자 불만제기 제품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그 주기는 클레임 제기율에 따라 가감된다.

#### ④ 면역품질 감독·검사제도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의 일환으로 장기간 품질이 안정적이고 검사결과 지속적으로 합격된 제품에 대하여 검사를 일정기간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 ⑤ 제품품질 검사기관 감독제도

중국 내 품질검사기관에 대한 인증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관계로 해당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하여 객관적인 검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지도·관리하는 제도이다.

#### □ 중국강제인증(CCC)제도와 제품 안전

CCC제도 도입 목적은 4统으로 ① 국가 통일 제품, ② 국가 통일 표준, ③ 국내 제품 비용 통일, ④ 수입제품 내국민대우(국내/수입제품 인증을 CCC로 통일)이다. CCC 인증현황은 현재 약 13만장의 인증서가 발급되었고 약 3만개 기업이 CCC 획득(외국 기업 약 2,000개 기업)했으며 현재 11개 인증기관, 100개 실험실에서 인증 업무 수행 중이다. CCC 인증 제품에 대하여 정기검사 실시로 문제 발생시 일반적인 문제일 경우 기업에 통보하여 개선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안전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CCC 인증효력을 정지하고 제품회수 명령을 내린다. 제품회수와 관련된 정보는 총국에서 기업 및 전국 상점에 통보하여 회수 및 판매금지 조치를 내리며 제품회수 결과확인은 각 성에서 확인하고, 총국에서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다. 중국에서의 제품회수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나, 일단 제품회수 명령을 받은 기업은 대부분 부도위기를 맞을 만큼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관계로 국내 기업은 철저한 판매 후 지속적인 품질관리·감독이 요구된다. CCC인증제도는 현재 9개업종 132개 품목이 대상이나 향후 WTO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협정(TBT협정 :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의 개정 사항에 따라 개정(품목은 추가 또는 감소)될 예정이다.”

#### □ 소비자 피해구제 업무

소비자 피해구제와 관련된 업무 과대로 산하기관(중국질량검역협회)으로 업무 이관했으며 주로 품질검역을 실시하여 검역결과에 따른 쌍방 합의를 유도하고 있으며 대부분 기업에서 해결하려고 한다.

#### 3) 중국소비자협회

중국소비자협회는 1984년도에 설립되었으며 그 목적은 ① 중국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② 제품, 서비스의 품질, 가격, 안전, 위생, 계량 등을 감독, ③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 지도이다. 조직구성을 보면 북경 소재 중국소비자협회를 중심으로 각 성(56개), 각 현(3,246개), 각 현 산하의 156,000개의 지방별 지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협회는 국가 공상행정관리국 또는 각 지역의 공상행정관리국에 소속되어 있다. 2002년도까지 중국소비자협회에 접수된 소비자 클레임 청구건수는 7,204,319건이며 해결률 약 96%에 이른다. 소비자 클레임 처리에 따른 경제손실은 약 45.1억위엔(6,765억원)에 이른다.

현재 중국소비자협회 등 소비자 권리보호 운동으로 인하여 중국 소비자의 의식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최근들어 소비자 개개인이 시장의 주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 ※ 클레임 제기율 변화

- 과거 개혁경제시대 : 피해자 10명 중 1명 제기
- 현재 : 피해자 10명 중 2~3명 제기

소비자의 클레임 제기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피해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비자의 클레임 처리방법으로는

① 기업과 직접 화해, ② 소비자협회를 통하여 클레임 처리, ③ 행정부분에 소원제기, ④ 중재법에 따른 중재위원회 중재 활용, ⑤ 소송 제기의 다섯가지 방법이 있으며 피해자는 우선 순위 없이 이중 어느 것이나 선택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정확한 통계는 나와있지 않으나 현재까지는 행정부분(소비자 권리보호국)을 활용한 클레임처리가 가장 많다. 중국내 기업은 “화해법”에 따라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소비자 클레임 전담창구 또는 전담자를 두어야 한다. 화해의 내용은 주로 환불, 교환, 수리, 배상 등이 있으며 대부분 화해로 종결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하자 또는 결함상품에 대한 회수와 관련하여 삼포와 Recall의 두 가지 개념을 적용한다. 삼포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판매한 것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Recall은 잘못된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판매한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삼포로 인한 법적제재 조치는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으나 올해 10월 전인대를 거쳐 행정명령으로 입법예정이다.

### 3. 중국의 시장변화와 소비자보호정책

중국은 시장경제 도입에 따라 지난 20년간 급격한 경제적 변화를 이루었고, 특히 WTO 가입에 따라 소비자 보호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정부차원의 소비자보호 정책의 특징은 “소비자보호 = 인권보호”라는 개념의 확대를 통하여 일반적인 소비자 보호의 개념을 인권보호의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소비자 권리보호의 강화와 더불어 기업체임을 강화하고 있으며 기존의 품질책임과 더불어 환경책임의 강화가 정부와 소비자협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고 있다. 소비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유전자 조합식품 등 BT(Bio- Technology)분야, 자동차

분야, 전자상거래 분야”로 이는 해당 산업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해시 조례로 입법 예고된 정별적 손해배상은 고의성이 있을 경우 일반적 손해배상액의 2배를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질적인 성격의 미국식 정별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은 현재 논의 중에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도입할 예정이다. 정신적 피해배상에 대해서는 1993년부터 민법에서 정신적 피해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 [사례] 부탄가스 폭발사고

“북경에서 부탄가스기기 내의 부탄가스가 폭발하여 어린이가 안면상해를 입음. 이 사고와 관련하여 법원은 일반적인 피해배상과는 별도로 10만 위엔(한화 1,500만원)의 정신피해배상을 판결함.(2심 판결 결과)”

중앙정부의 소비자권익보호법, 산품질량법 등 상위법에 근거한 세부 실행 법률이 각 지방별로 입법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1993년 기본법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지방(성)에 권한을 위임됨으로서 각 지방(성)의 세분화된 법의 발전이 기본법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상해 조례가 지방입법에 있어 실현적 단계로 타 지방에 비해 입법 내용이 강하다. 소비자 권리보호법은 중국통상행정관리국에서 제·개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 3년 이내에 개정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방향은 경영자(기업)의 책임영역을 확대, 즉 책임주체를 생산자·판매자로 확대되고 소비자의 개념이 과거 생활소비자라는 개념에서 소비자인 동시에 투자자라는 개념으로 소비자의 개념변화를 반영하여 사회적 약자보호를 강화하고 더불어 악질 클레임에 대한 관리 및 제재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 4. 주요 시사점

먼저 한국기업의 중국진출 시에는

중국 법제도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하다. 현재 중국은 WTO 가입 후 많은 법제도 및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은 중앙보다 짧은 기간 내에 많은 변화를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은 무엇보다 중국의 법제도, 특히 조례에 대하여 지속적인 정보입수가 필요하다. 그리고 TBT협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중국 내 제품 품질과 관련한 제도는 WTO 가입에 따라 국제규격이나 제도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TBT협정의 발전과정이나 상황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산품 질량법 개정으로 제품 품질에 대한 중국 소비자의 의식이 높아지고 중국 정부의 단속은 물론 관련 소송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 예방 법무 차원에서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양국간 상호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국 내 관련기관이 아직은 국내 기관과의 업무협력이나 제휴가 이루어져 있지 않으나, 대부분의 기관에서 향후 상호업무협력 및 정보교류를 희망하고 있다. 중국 기관이 정보의 외부공개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고(학술적인 용도 이외 제공 곤란), 중국관련 정보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면 관련기관과의 다양하고 지속적인 교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제거래에 따른 분쟁 조정의 논의가 필요하다. 양국간의 교역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 제품의 수입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제품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국제문제화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며 특히 전자상거래 등 수입업자가 명확하지 않은 제품사고의 경우 피해구제 방법이 복잡해지고 책임주체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도 양국간 제품사고 분쟁처리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